

감 사 원 고 발

제 목 ㄱ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
피 고 발 인 성 명: U
주 소: 전라남도 구례군
근 무 처: 구례군 읍사무소
전근무처: 구례군 읍과
고 발 건 명 U: 뇌물수수(「형법」 제129조)

고 발 사 실

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결과 일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
U는 2010. 9. 7.부터 2017. 1. 8.까지 구례군 읍과 산림T/F팀장으로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총괄하였다.

1. U의 경우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제1절 7-나-7)에 따르면 설계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·모델·상표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2014년 1월경(날짜 모름) T이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후 설 명절을 앞두고 T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았고 2014년 2월 말경(날짜 모름) ○○의 케이블시스템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

결정하고 바로 T으로부터 구례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창문 근처에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여 차량 주유비,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㉠㉠의 케이블시스템을 실시 설계에 반영한 대가로 9차레에 걸쳐 현금 170만 원과 물품 39만 원 상당, 계 209만 원 상당의 금품을 T으로부터 수수하였다.

이와 같이 U는 「형법」 제129조(뇌물수수)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.